

평생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예원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과 예원예술대학교 경기드림캠퍼스 평생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4.3.1.><개정 2016.2.15>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국제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대학의 자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본 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

제3조(소재지) 본 교육원은 예원예술대학교 전북희망캠퍼스와 경기드림캠퍼스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각 지역에 본 교육원의 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3.1.><개정 2016.2.15>

제3조의 2(하부조직) 경기드림캠퍼스 내에 게임교육센터를 두며, 게임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게임교육센터 규정을 따로 정한다.<신설 2017.5.10>

제4조(교육과정) ① 본 교육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둔다.<개정 2015.1.13>

1. 학점은행제
2. 독학학위과정
3. 자격증 취득과정
4. 전문교육과정
5. 일반교양과정

② 제1항의 각 과정에 개설하고자 하는 세부과정은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1.13>

제5조(정원) 본 교육원의 강좌별 정원은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1.13>

제6조(수업) 본 교육원 수업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주간, 야간 및 계절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7조(교육장소) 교육 장소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교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8조(원장) ① 본 교육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고 본 교육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 각계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행정실) 본 교육원의 행정실은 예원예술대학교 직제에 의한다.

제9조의1(부설기관의설치) 본 교육원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3>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좌개설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수강인원 및 학습비(수강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수강등록 및 납부금

제14조(등록 및 입학) 본 교육원의 수강등록과 입학 시기는 매학기에 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강자격) 본 교육원에 지원 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학점은 행제 또는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학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수강원서의 제출) 본 교육원에 수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발절차) 본 교육원의 수강자 선발은 각 과정별로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등록 및 납입금 반환) ①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 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의 사정에 의해 수강료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학위과정)은 [별표1]에 의거 반환하며, 비학위 학습과정은 [별표1-1]에 의거 반환한다.<개정 2016.2.15>

제5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수료

제19조(수업연한) 본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업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 ①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학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에서 정한다.

제21조(이수교과목) 각 과정별 이수교과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수료증 및 자격인증서(자격증) 수여) ① 각 강좌별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

② 과정개설 공인기관 및 민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③ 본 교육원에서 직접 개발·개설한 자격과정에 한하여 총장명의로 자격인증서(자격증)(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23조(수료증명서 발급) 각 강좌별 수료자는 수료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수강생 지도 및 장학금

제24조(수강생 지도) 본 교육원의 수강생은 학습활동 전반에 관하여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포상)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원장은 교육원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열람
2. 취업지원실 이용
3. 원우회, 동아리 결성 및 활동지원

제28조(장학금) ① 본 교육원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방정한 자 및 본 교육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②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수강신청일로부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장학혜택이 중복일 경우에는 장학혜택이 많은 쪽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한다.

제7장 공개강좌

제29조(공개강좌) ① 본 교육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장 재정

제30조(회계)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예원예술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하며,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12.4>

제31조(예산승인) 원장은 본 교육원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수입원)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자의 학습료
2. 개인이나 단체의 보조금
3. 위탁교육 지원금(위탁교육시)
4. 기타 수입

제33조(결산보고) 원장은 사업 수행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4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원예술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5조(운영내규) 본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납입금 반환기준

[별표 1]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비 반환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별표 1-1]

비학위 학습과정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가. 학습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 과정의 강좌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별지 제2호 서식 수료증명서]

제 호

수료 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과 정 :

수학기간 :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별지 제3호 서식 자격인증서]

제 호

자 격 인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예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규정 제22조에 의한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장(학위명 성명)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학위명 성명)